주 문

1. 피고 C은 원고에게 58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70%를 원고가, 나머지를 피고 C이 각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